

「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」 대상어선 · 어구 해체처리 과업지시서

I. 과 업 의 개 요

1. 과 업 명 :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·어구 해체처리 용역(1차)

2. 과업의 목적

- 경상북도 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발생한 폐업어선의 선체 및 해체처리 대상 어구를 관계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라 적법하고 신속하게 해체·폐기 하기 위함.

3.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

가. 발주청 :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(해양수산정책과)

나. 과업수행자 : 조선소, 구조물 철거업체, 폐기물처리업체, 폐선처리 업체 등
본 용역의 계약상대자(이하“과업수행자”라 한다)

4. 과업의 범위

가. 대상어선은 2026년 경상북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에 따라 “발주청”이 “과업수행자”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한 어선으로 하며,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(공공용도 재활용 등)로 인하여 인수·인계가 변동될 수 있다.

※ 대상어선(1척) 처리비

(단위 : 원)

선 명	톤 수	선 질	건조년월일	계류장소	금 액	비 고
해진호	39	FRP	2001-07-16	울진군 죽변항	55,449,000	근해통발

5. 과업의 내용

경상북도(이하 “발주청”이라 한다)가 “과업수행자”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하는 감척대상 어선, 기관·장비 및 어구 등을 인수하고, 매각대상 기관·장비 등을 분리한 후 선체 및 감정평가 세부명세표에 ‘해체처리’로 표시된 어구(이하 “해체대상 어구”라 한다)를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·폐기하는 과업을 수행한다.

가. 어선·어구 등의 인수·인계 및 관리

“과업수행자”는 감정평가 세부명세표를 기준으로 대상어선 및 해체대상 어구 등을 인수하고, 인수한 때부터 해체·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.

나. 해체 등 폐기 처리

“과업수행자”는 매각대상 기관·장비 등을 분리한 후 선체 및 해체대상 어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·폐기하고, 그 처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를 “발주청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6. 과업의 기간

가.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까지로 한다.

나. 다만,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기상악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“발주청”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“발주청”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Ⅱ. 과 업 수 행 지 침

1. 과업수행 일반기준

가. 본 과업수행 시 “과업수행자”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,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
- 나. 과업수행은 관련 법령(해양환경관리법, 폐기물관리법 등)과 규정 및 과업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“발주청”과 합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.
- 다.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“발주청”이 서류 및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“과업수행자”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“과업수행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. “과업수행자”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어선별 해체처리비를 산출하여 “발주청”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“과업수행자”는 착수계 제출 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해석을 “발주청”과 “과업수행자”가 상호 달리할 경우 “발주청”의 해석에 따른다.

2. 착수계 제출

- 가. “과업수행자”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(주말 및 공휴일 포함. 단,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)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 하며,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- 1)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
 - 2)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
 - 3) 대상어선 해체처리비 내역
 - 4) 현장대리인 선임계, 재직증명서
 - 5) 사용인감계
 - 6) 사업자등록증(사본)
 - 7) 해체대상 어구 운반·해체·폐기 처리계획서
- ※ 처리방법, 예정 처리장소, 폐기물처리업체 위탁 여부 등을 포함하며, 착수계 제출 당시 처리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구 반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- 8)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3.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

- 가. “발주청”은 “과업수행자”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만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“과업수행자”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.
- 나. “과업수행자”는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 중 인적·물적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, 제반 민·형사·행정상 책임을 진다.
- 다. “과업수행자”는 고용인력의 임금 등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금전 민원에 대한 책임을 “발주청”에 전가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.

4. 계약의 해지

- 가. 과업착수 후 다음 사유 발생 시 “발주청”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때 “과업수행자”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1) “발주청”이 지시한 제반사항을 “과업수행자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 - 2) “과업수행자”의 과업수행 능력 부족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“발주청”이 판단할 때
 - 3)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상 내용을 과업수행자가 위반한 때
- 나. 계약해지의 원인이 “과업수행자”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“발주청”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“과업수행자”는 배상하여야 한다.

5. 대상어선 · 어구 등의 인수 · 인계

- 가. “과업수행자”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(주말 및 공휴일 포함. 단,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)에 대상어선 및 해체대상 어구 등의 인수·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, 인수·인계 및 반출 일정을 사전에 “발주청”에 통보하여야 한다.

- 나. “과업수행자”는 인수·인계 시 감정평가 세부명세표를 기준으로 대상어선, 기관·장비 및 해체대상 어구의 현존 여부와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다. 인수·인계 과정에서 감정평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·누락 또는 현저한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인수완료 처리하지 아니하고 즉시 “발주청”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라. 통발 등 다량으로 적치된 어구로서 현장 여건상 개별 전수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구의 종류별 적치현황 및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·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인수·인계 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마. 사업대상자는 감정평가 이후 해체대상 어구를 임의로 반출·매각·양도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동·누락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인수·인계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, 감정평가 이후 어구의 변동·누락 여부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- 바. “과업수행자”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어선 및 해체대상 어구 등을 인수할 때 “별지 제1호” 서식의 인수·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와 “과업수행자”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, 1부는 “발주청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. 인수·인계서에 입회하는 담당공무원은 현장에서 인수·인계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및 제출된 확인자료를 확인한다.
- 아. “과업수행자”가 해체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“발주청”은 어선 말소 절차를 진행하므로, 대상어선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.
- 자. “과업수행자”는 대상어선을 제3자에게 임대·양도하거나 용도변경·소유권 이전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운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6. 대상어선 · 어구의 관리

- 가. “과업수행자”는 대상어선 및 해체대상 어구를 인수한 때부터 해체·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, 훼손·파손·도난·유실 또는 임의 반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나. 인수·인계가 완료된 해체대상 어구에 대한 관리책임은 “과업수행자”에게 있으며, 이를 사업대상자에게 반환하거나 보관·관리를 다시 맡겨서는 아니 된다.
- 다. “과업수행자”는 인수한 해체대상 어구를 매각·양도·대여·교환·무상제공·재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라. 인수한 해체대상 어구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해체장 또는 적법한 폐기물 처리 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. 부득이하게 현장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 구획·표시 등 임의 반출이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마. 인수 이후 해체·폐기 완료 전까지 발생한 파손·도난·유실·임의처분 및 그 밖의 관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“과업수행자”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.
- 바. “과업수행자”는 “별지 제2호” 서식의 어선·어구 등 일일관리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고 과업 완료 시 “발주청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7. 해체 등 폐기 처리

- 가. “과업수행자”는 대상어선 및 해체대상 어구를 인수한 후 계약기간 내에 선체 및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·폐기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·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“발주청”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나. “과업수행자”는 선체 해체 전 폐선처리번호 및 선명이 확인되도록 선체 좌·우에 표시하고, 해체 전 선체 전경, 선수·선미, 조타실, 해체작업 중 및 해체완료 후의 사진을 구분하여 촬영하여야 한다.
- 다. “과업수행자”는 해체대상 어구를 관계 법령에 적합한 해체장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여 전량 해체·폐기하여야 한다.
- 라. 해체대상 어구의 처리장소·운반방법 및 폐기물처리업체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“과업수행자”가 정할 수 있으며,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마. “과업수행자”는 해체대상 어구의 반출 전에 처리방법, 처리장소,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여부 및 처리예정일 등 처리계획을 “발주청”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바. 해체대상 어구를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운반·인계·보관·해체·폐기 등 전 과정에 관한 계약상 책임은 “과업수행자”에게 있으며, 위탁처리를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사. 해체대상 어구는 최종 처리과정에서 어업용 어구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해체·파쇄·압축 또는 그 밖의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아. “과업수행자”는 해체대상 어구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확보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.

- 1) 어구 반출 전 현장사진
- 2) 상차 및 반출사진(운반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)
- 3) 처리장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4) 계량증명서, 폐기물 인계·인수 관련 자료 등 실제 처리량 또는 처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5) 해체·폐기 전·중·후 사진
- 6) 폐기물 위탁·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
- 7) 그 밖에 “발주청”이 과업 이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자. “과업수행자”가 폐기장소·운반방법 또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선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반비, 처리비 및 그 밖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,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

차. “과업수행자”는 선체 및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·폐기 예정일정을 최초 작업일 5일 전까지 “발주청”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카. 선체와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·폐기는 「폐기물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8.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

가. 선체 및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·폐기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한다.

나. “해체 등 폐기” 비용 청구

- 1) “과업수행자”는 선체 및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·폐기를 완료한 후 『해체·폐기 증명서』, 『폐업어선·어구 해체 사진첩』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“발주청”은 준공검사원과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, 선체 및 인수·인계가 완료된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·폐기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준공된 것으로 본다.
- 3)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“과업수행자”는 대금청구서를 “발주청”에 제출하고, “발주청”은 관계 절차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한다.
- 4) “발주청”은 “과업수행자”가 청구한 “해체 등 폐기”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해체완료 관련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.

9. 책임에 관한 사항

가.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“과업수행자”의 과실로 발생하는 제3자와의 민·형사·행정적 문제는 “과업수행자”가 책임을 진다.

나.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인·허가 등의 조치는 “과업수행자”가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“과업수행자”가 부담한다.

다. “과업수행자”의 중대한 과실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“과업수행자”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.

라. “과업수행자”가 해체대상 어구를 임의로 매각·양도·대여·재사용하거나 해체·폐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보며,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.

다. 폐기물처리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“과업수행자”가 계약상 책임을 진다.

10. 기타사항

가. 본 과업과 관련하여 “발주청”이 지명한 감독관(이하 “감독관”이라 함)은 과업수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, 필요시 장부 및 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“과업수행자”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나. “과업수행자”가 제출하는 제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- 붙임 1. 별지 제1호 서식 : 『인수인계서』
2. 별지 제2호 서식 : 『어선·어구 등 일일관리 기록부』
3. 별지 제3호 서식 : 『폐업어선 처리대장』
4. 별지 제4호 서식 : 『해체·폐기 증명서』
5. 별지 제5호 서식 : 『폐업어선·어구 해체 사진첩』 끝.

인 수 · 인 계 서					
일 시 : 2026년 월 일 시 분					
장 소 :					
어선의 내 역	선 명	호			
	어선번호		진수연월		
	총 톤 수		선체재질	☐ 목선 ☐ FRP ☐ 강선	
	기관의 종류	☐ 육상디젤 ☐ 디젤	기관마력		
연번	품목명	감정평가 수량	인수·인계확인사항	변동·누락 내역 및 사유	비고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
※ 감정평가 이후 변동·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며, 임의로 “이상없음”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본인은 감정평가 이후 어선·어구 및 장비 등의 변동·누락 여부를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,
위 인수·인계 대상 물품을 “과업수행자”에게 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본인은 위 물품을 인수하였으며, 인수한 해체대상 어구를 임의로 매각·양도·대여·재사용하지 않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해체·폐기할 것을 확인합니다.

입회자는 현장에서 인수·인계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및 제출된 확인자료를 확인합니다.

<별지 제3호 서식>

폐업어선 처리대장

[illegible]

해체 · 폐기 증명서

선 명		어선번호			
선 질		톤 수		기 관	
해 체	기 간				
	장 소				
폐 기	장 소				
	방 법				

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인 위 폐업어선의 선체 및 인수·인계된 해체대상 어구를
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·폐기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본 증명서의 내용 및 첨부 증빙자료에 허위 또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
따른 민·형사·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, 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
- 붙임 1. 폐업어선·어구 해체 사진첩 2부.
2.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 1식.

2026. . .

제출자(과업수행자) 주 소 :

업체명 : 대표자 : (인)

경상북도지사 귀하

폐업어선 · 어구 해체 사진첩	
해체 전 모습	
어선 전경(측면)	
선수 전경(앞면)	
선미 전경(뒷면)	

※ 첨부요령 :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

폐업어선 · 어구 해체 사진첩

해체 작업 중 및 완료 후 모습

조타실 철거전경
(해체 작업 중)

선체해체 전경
(해체 작업 중)

해체 완료 후
현장 전경

폐업어선 · 어구 해체 사진첩

해체대상 어구 처리 모습

어구 반출 전 현황

어구 상차·반출 모습

처리장 반입 모습

폐업어선 · 어구 해체 사진첩

해체대상 어구 처리 모습

어구 해체·폐기 작업 중

어구 해체·폐기 완료 후

기타(어구해체)

폐업어선 · 어구 해체 사진첩

기 타 모 습

참 고 1

참 고 2

참 고 3